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정보원 규정

제정 2004. 9. 10.

개정 2009. 9.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정보원(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이하 “농생명정보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농생명정보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전산화 및 교육 연구의 효율적 지원
2.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정보 개발, 구축 및 효율적 지원

제3조(조직) 농생명정보원에 교육연구지원팀, 정보개발팀, 정보구축팀을 둔다.

1. 교육연구지원팀은 교육·연구 및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 정보개발팀은 연구 및 교육 관련 정보를 기획하고 개발한다.
3. 정보구축팀은 연구 및 교육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제4조(원장과 부원장) 농생명정보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1. 원장은 농업생명과학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2. 부원장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3. 부원장은 원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농생명정보원에 겸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2.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하고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3.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원장이 임명하

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농생명정보원의 운영과 시설관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결산

② 정보화 및 전산화 업무의 선정, 평가 및 연구계획

③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제

④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기타 농생명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59호, 2004.9.10.)

이 규정은 200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전자계산실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87호, 2009.9.10.)

이 규정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